

|       |                    |      |
|-------|--------------------|------|
| 의안번호  | 제 호                | 의결사항 |
| 의결연월일 | 2022. . .<br>(제 회) |      |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
| 제출자   | 국무위원 권영세<br>(통일부장관) |
| 제출연월일 | 2022. . .           |

법제처 심사 전

### 1. 의결주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정부위원의 구성은 기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운영규정」(통일부 예규)으로 정하였으나 이를 시행령에 구체화하고, 통일부장관이 국무총리에게 민간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근거와 추천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촉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2) 입법예고(2022. 00. 00. ~ 00. 00.)

3) 행정규제 :

대통령령 제            호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4조의2를 각각 제4조의2 및 제4조의3으로 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위원의 구성) ① 법 제5조제3항제1호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은 다음 각 호 소속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맡  
한다.

1. 기획재정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외교부
4. 통일부
5. 법무부
6. 문화체육관광부
7. 농림축산식품부
8. 산업통상자원부
9. 보건복지부
10. 국토교통부
11. 해양수산부

12. 중소벤처기업부

13. 국가안보실

14. 국무조정실

15. 국가정보원

16.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1개 관계 중앙행정기관

②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법 제5조제3항제2호의 민간전문가를 국무총리에게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제협력, 인도지원, 개발협력, 사회문화교류, 북한문제, 국제관계, 법제 등 분야별 전문가를 균형 있게 추천해야 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공무원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남북교류협력 관련 활동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가진 사람

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다. 국제기구

제4조의2(종전의 제4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촉위원의 추천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촉위원의 직무계속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제4조의2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임기가 만료되는 위촉위원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  | 행  | 개                  | 정 | 안   |
|----|----|--------------------|---|-----|
| <신 | 설> | 제4조(위원의 구성) ①      | 법 | 제5조 |
|    |    | 제3항제1호의 차관 또는 차관급  |   |     |
|    |    | 공무원은 다음 각 호 소속 공무  |   |     |
|    |    | 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  |   |     |
|    |    | 는 사람을 말한다.         |   |     |
|    |    | 1. 기획재정부           |   |     |
|    |    |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
|    |    | 3. 외교부             |   |     |
|    |    | 4. 통일부             |   |     |
|    |    | 5. 법무부             |   |     |
|    |    | 6. 문화체육관광부         |   |     |
|    |    | 7. 농림축산식품부         |   |     |
|    |    | 8. 산업통상자원부         |   |     |
|    |    | 9. 보건복지부           |   |     |
|    |    | 10. 국토교통부          |   |     |
|    |    | 11. 해양수산부          |   |     |
|    |    | 12. 중소벤처기업부        |   |     |
|    |    | 13. 국가안보실          |   |     |
|    |    | 14. 국무조정실          |   |     |
|    |    | 15. 국가정보원          |   |     |
|    |    | 16.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사항 |   |     |
|    |    | 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지정하    |   |     |
|    |    | 는 1개 관계 중앙행정기관     |   |     |
|    |    | ②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   |     |

제4조(협의회 위원 임기) ① (생

사람 중에서 법 제5조제3항제2  
호의 민간전문가를 국무총리에  
게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경  
제협력, 인도지원, 개발협력, 사  
회문화교류, 북한문제, 국제관  
계, 법제 등 분야별 전문가를 균  
형 있게 추천해야 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  
서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  
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공무원 또는 변호사의 직에 1  
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남  
북교류협력 관련 활동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가진 사  
람

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

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다. 국제기구

제4조제2(협의회 위원 임기) ①

|                                                                                       |                                                                                                                                   |
|---------------------------------------------------------------------------------------|-----------------------------------------------------------------------------------------------------------------------------------|
| <p>략)</p> <p>② 법 제5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lt;단서 신설&gt;</p> <p>제4조의2 (생략)</p> | <p>(현행과 같음)</p> <p>② -----</p> <p>-----</p> <p>--. 다만,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p> <p>제4조의3 (현행 제4조의2와 같음)</p> |
|---------------------------------------------------------------------------------------|-----------------------------------------------------------------------------------------------------------------------------------|

< 의안 소관 부서명 >

|           |                  |
|-----------|------------------|
| 통일부 교류지원과 |                  |
| 연락처       | (02) 2100 - 2396 |